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3. 11. 10.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희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1993년 11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 96 회 임시회

.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 11. 10.)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조영창)

가. 제안이유

-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므로, 본조례 제정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과세면제하여야 하나
-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를 과세면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현행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내용을 보완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중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윤 태 무)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 제3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면세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세면제를 지원하여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요지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례중 제4조(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면제조항 3항
다음에 4항으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규정 신설

7. 심 사 결 과 : 수정동의안 7인중 7인찬성으로 제4조(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4항의 조문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
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를 신설하고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 신.구 조문 대비표
- .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 단서중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